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s and Design Guidelines on Disabled Auditorium in Cultural Facilities

문화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법적기준 및 문헌 연구

Lee, Kijeong* 이기정 | Yoon, Taejun** 윤태준 | Park, Hyeonsoo*** 박현수

Abstract

Purpose: Due to increase of interest in the view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ordinances that are related to an optimal auditorium for the disabled are being executed. However, since there are no detailed criteria regarding the optimal auditorium, there is a necessity that it should be supported by more concrete criteria for installation. Therefore, the study is aim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suggest the criteria for installation of the optimal auditorium in the future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and the analysis of design guidelines that are related to the auditorium for the disabled. **Methods:** First, legal standards and design guidelines that are related to the auditorium for the disabled were analyzed, and Second, items and things to be improved that are required to suggest the criteria for installation of the optimal auditorium in the future were looked into by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contents. **Results:** Items and considerations by items that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installation of the optimal auditorium were looked into, and based on these results, concrete and standardized installation criteria can be suggested.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optimal view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within cultural facilities can be created through establishment of more concrete installation criteria for the optimal auditorium in the future.

Keywords The Disabled, Cultural Facilities, Disabled Auditorium, Optimal Auditorium

주 제 어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관람석, 최적관람석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문화기본법」 제4조¹⁾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향유 및 문화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외출 시 집 밖 활동에서 45.3%가 불편함을 느끼며,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57%로 높았다(KIHASA, 2014: 312-316)²⁾.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문화 활동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 및 접근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의 경우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문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관람 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를 비장애인에 비해 관람에 제한을 받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Member, The doctor's course comple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Primary author: lovesky99@nate.com)

** The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yountaejun@naver.com)

*** Professor, College of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spk@konkuk.ac.kr)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Disabled Survey 2014, p.312-316.

이러한 장애인 관람환경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칭함) 및 지자체 관련 조례에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기준 및 설치관련 내용이 명시되는 등 법적 제도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

장애인 관람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단순한 관람에서 '최적의 관람'으로 장애인 관람환경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관련 조례에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고 있다.

총 67개의 지자체 조례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적절한 설치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장애인 관람석이 적절히 설치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적관람석에 관한 내용 역시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 보다 구체화된 설치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의 선행연구로 장애인 관람석 관련 국내·외 법적기준 및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최적관람석 기준 마련에 필요한 항목을 파악, 관련 기준에 대한 제언을 통해 향후 최적관람석의 구체화된 설치기준 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관람석 관련 법적기준 및 문헌을 분석하여 기준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관람석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국내·외 현행법 및 문헌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내용을 비교 및 분석하여 향후 문화시설 내 최적관람석의 설치기준 제시를 위한 항목을 파악하고 항목별 관련기준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다만, 법적기준 및 문헌을 검토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범위를 '문화시설(공연장 및 관람장)'로 두어 범위를 한정지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설치기준의 마련이 아니라 향후 설치기준 제시를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로서 구체화된 설치기준의 제안에 있어서는 제한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2. Outline of the Disabled Auditorium

2.1 Definition and Significance of the Disabled Auditorium and Optimal Auditorium

장애인 관람석은 장애인 등이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좌석으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장애인 등이 사용가능한 관람객석을 '장애인 관람석'이라 칭한다.

문화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의 경우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좌석으로 단순한 좌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이라는 주제에 부응하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관람석은 장애인 등이 문화예술을 관람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람하기에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문화향유 및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 등이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좌석에서 관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 지자체 조례에서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조례에서의 '최적관람석'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하며, 최적의 관람환경을 구비하기 위한 최선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조례에서와 같이 '최적관람석'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하되 이동 및 피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객석 내에서 이동 및 피난에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하였으며, 관람하기 좋은 위치의 좌석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문화시설 내 최적의 관람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2.2 Importance of the Disabled Optimal Auditorium Installation at Cultural Facilities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은 문화적 삶을 통해 완성(Cho, MoonSun et al., 2002: 41)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은 증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문화 활동을 함에 있어 물리적 제한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관람과 같이 시설 내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의 경우, 관람을 행하기도 전에 물리적 접근성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관람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이 불편함과 불쾌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의 비율만 하더라도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의 관람석만 갖추게 되어 있어, 시설 내 관람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공간도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람석이 맨 앞이나 맨 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문화 활동을 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영화관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전체 상영관의 81%가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줄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있는 등 적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Table 1).

이에 장애인이 문화시설 내에서 보다 나은 관람활동을 행하기 위해서는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적관람석의 설치

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적관람석의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는 최적관람석 설치기준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Table 1] Location of Auditorium for Disabled Using Wheelchair in Theater

(unit : number, %)

	back row or middle row	front row	no disabled auditorium	total
number of theater	168	722	240	1,130
number (ratio(%))	14.9 (18.9)	63.9 (81.1)	21.2	100 (100)

Note: NAEA, 2012: 45

3. Legal Standards and Design Guidelines Analysis on the Disabled Auditorium

3.1 Domestic Parts relating Disabled Auditorium and Optimal Auditorium

장애인 관람석 관련 국내의 법적기준으로는 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칭함), 그리고 67개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련 조례를 살펴보았다.

문헌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을 살펴보았으며, 최근개정판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1) Act on Convenience Promotion(편의증진법)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를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문화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은 관람석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을 갖추게 되어 있다.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본다(명시하고 있다 Table 2).

또한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의 설치장소 및 관람석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Table 2] Parts Relating to Installation of Disabled Auditorium Installation in the Act on Convenience Promotion

	parts relating to installation of disabled auditorium
enforcement ordinance	Installation rate of disabled auditorium
enforcement regulation	location of disabled auditorium, valid floor area, movable seat for wheelchair user, device for hearing-impaired

Note: This table is arranged by summarizing applied contents of Act on Convenience Promotion enforcement ordinance special table2, enforcement regulation special table1.

즉, 시행령 별표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라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되며, 법에서 정한 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갖추되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유효바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난청자를 위한 각종장치를 설치권장하고 있다.

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장차법)

장차법에서는 제18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따르게 되어 있다.

또한 제24조 및 제25조,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이 나타나 있으므로 관람석의 설치와 관련하여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람석의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조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무대접근장치, 안내책자(표지)와 같은 추가적인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³⁾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또한 명시하고 있다.

3) 장차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장차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 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②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 ③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의 장비 및 기기 제공
- ④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 제공

시행령 별표4의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의 경우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의 경우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된다.

즉,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의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며, 단계적 범위에 따라 관람석의 설치 및 개조, 기타 각종 장비제공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시행령 별표4에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들도 2015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Optimal Auditorium Installation-related Ordinance(최적관람석 설치관련 조례)

최적관람석 관련 조례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다.

2004년 10월 13일 양주시를 시작으로 2005년도만 하더라도 경기도 시·군 내 지자체에서 21개의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2015년 현재 67개의 관련 조례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⁴⁾.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적관람석의 설치비율,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보호자 관람석의 위치, 최적관람석의 관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3). 최적관람석 설치비율의 경우, 총 67개의 조례 중 56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장애인 관람석 수의 절반 이상을 최적관람석의 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6개의 조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이동편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조례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4) 최적관람석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2015. 8. 24. 기준, 가나다 순) 가평군,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 구리시, 군산시, 군포시, 김포시, 김해시, 남양주시, 논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동두천시, 동해시, 목포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부천시, 서산시, 서울 강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아산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인천시, 익산시, 전라남도,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천시, 창원시, 천안시, 충청남도,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포항시, 하남시, 화성시

이 밖에 최적관람석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하도록 표기하는 안내표지에 관한 내용은 1개의 조례에서 '최적관람석의 관리'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Table 3] Articles Relating to Installation of Optimal Auditorium in the Domestic Ordinance

classification	articles relating to installation of optimal auditorium			
	A	B	C	D
Gangwon-do	●	●	●	●
59 other than Gyeonggi-do	●	●	●	
5 other than Gwangju	●		●	

Note: This table is arranged with applied contents of ordinance relating to optimal auditorium. (A : optimal auditorium rate/B : mobility facility expansion/C : guardians of disabled auditorium/ D: optimal auditorium management(Guide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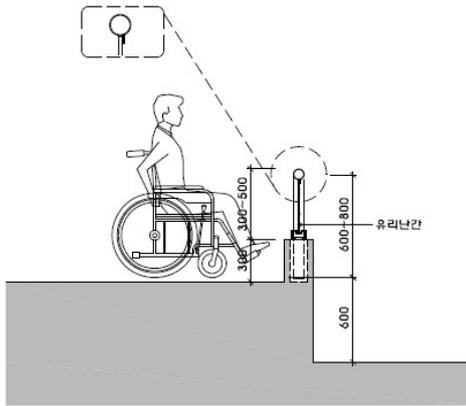
4) Detailed Standards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에는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장소와 관람석의 구조, 무대의 구조에 대한 원칙과 상세도가 나타나 있다.

표준상세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도서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와 관람석의 구조(설치비율, 유효바닥면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이동식 좌석 및 난청자를 위한 장치)에 대한 원칙은 편의증진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며, 표준상세도인 만큼 전체 관람석 수를 기준으로 2type(200석 미만/500석 미만),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에 따라 3type(중간/후면/전면), 휠체어 좌석 확보유형에 따라 3type(착탈식/공간확보형/가변형)의 상세도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단식 관람석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난간의 높이를 0.6m~0.8m 로 명시하고 있으며[Figure 1], 앞좌석의 유무에 따라 2type의 상세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대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람석에서 무대 및 준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고정형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의 설치에 관한 상세도를 제시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120-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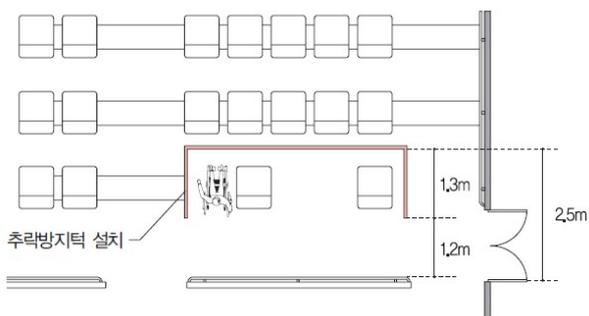


[Figure 1] Detailed Standards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 Height of the Fall Prevention Railing

5) Installation Manual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20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는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 및 관람석의 구조, 무대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관한 사항 또한 나타나 있다.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와 설치비율, 유효바닥면적, 보청장치에 관한 사항은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최적관람석의 정의 및 비율, 바닥마감, 통로구조, 보호자석과 목발이용자 좌석, 좌석배치, 추락방지시설, 무대의 경로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에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최적관람석의 비율을 장애인 관람석의 50%이상으로 명시, [Figure 2]와 같이 휠체어 사용자와 보호자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유효폭 1.2m 이상의 통로에 근접한 좌석을 휠체어 사용 관람석으로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Figure 2] Installation Manual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 Structure of the Auditorium for Wheelchair User

또한, 좌석배치는 분산하여 배치토록 하며, 바닥마감은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람석까지 연결되는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휠체어가 회전 또는 교행을 해야 할 지점에는 1.5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며, 목발이용자 좌석의 경우에는 통로에 면한 좌석으로 하되 통로 팔걸이는 상하가변식을 권장하고 있다.

휠체어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0.3m 이상의 턱 또는 난간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 그리고 추락방지 난간의 높이를 0.8m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무대까지 연결된 경로에 있어서도 유효폭 1.2m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무대접근장치가 설치된 경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City of Seoul, 2012: 79-83).

6) Installation Manual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at Cultural Facilities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는 공연 및 관람시설에 적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나타나 있으며, 장애인 관람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와 설치비율, 유효바닥면적, 보청장치에 관한 사항은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에 더불어 바닥마감, 보호자석과 목발이용자 좌석, 좌석배치, 추락방지시설, 통로구조(통로 폭, 통로 난간높이 및 손잡이 지름, 통로 경사로 기울기, 계단코 마감, 방향유도 등), 무대접근장치, 안내표지, 피난 경로(피난안내도, 피난 공간), 시야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공연장이 여러 개인 경우 어느 공연장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추락방지 난간의 경우 높이를 1.1m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관람석에 이르는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관람석에 이르는 통로가 계단일 경우 계단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손잡이의 높이(0.8m~0.9m)와 손잡이의 지름(3.2cm~3.8cm)을 명시하고 있다. 통로의 유효폭(1.2m 이상)과 통로 경사로의 기울기(1/12 이하) 또한 나타나 있다. 이 밖에도 계단코 마감이나, 통로 방향유도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난 경로와 시야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관람석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피난 경로를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관람에 피로를 덜할 수 있는 눈높이 수직 시야범위를 40도로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65-74).

7) Barrier-Free Certification Manual : Architectur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 건축물편)

200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에는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 유효바닥면적, 이동식 좌석, 보청장치, 보호자석, 추락방지시설, 안내표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적절·부적절한 사례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설치위치, 유효바닥면적, 이동식 좌석, 보청장치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공간에 보호자석을 확보하되 착탈식이나 가변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석에 대한 명확한 안내표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추락방지 난간의 경우 0.9m~1.0m 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07: 270-274).

3.2 Foreign Parts relating to Disabled Auditorium and Optimal Auditorium

장애인 관람석 관련 국외 법적기준 및 문헌으로는 미국의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와 「UFAS Retrofit Manual」,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그리고 캐나다의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과 「BUILDING ACCESS HANDBOOK」을 살펴보았다.

1) UFAS

UFAS에는 집회시설에 적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련 사항이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으로 설치비율, 설치위치, 바닥마감, 유효바닥면적, 통로구조, 보청장치, 무대접근장치, 시야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비율은 전체 관람석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관람석 1000석 이하에서 거의 대부분이 2% 보다 높은 설치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대 6%의 설치비율이 나타난다(Federal Register, 1984: 151-193).

[Table 4] Number of required wheelchair locations in assembly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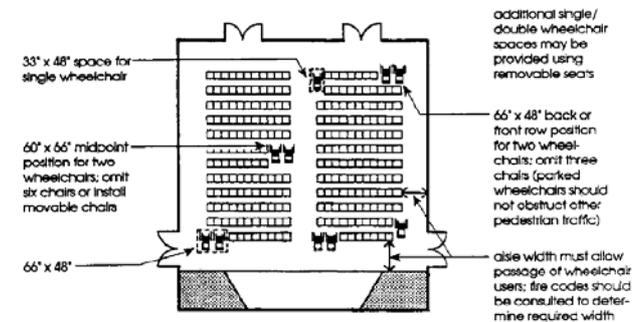
capacity of seating	number of required wheelchair locations	percentage
50 to 75	3	4~6%
76 to 100	4	4~5.2%
101 to 150	5	3.3~4.9%
151 to 200	6	3~3.9%
201 to 300	7	2.3~3.4%
301 to 400	8	2~2.6%
401 to 500	9	1.8~2.2%
501 to 1000	2% of total	2%
over 1000	20 plus 1 for each 100	up to 2%

2) UFAS Retrofit Man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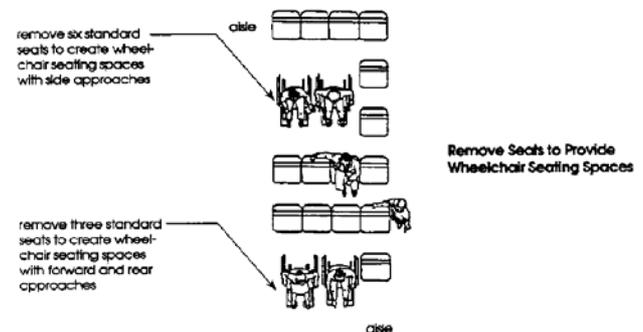
UFAS Retrofit Manual에서는 장애인 관람석에 관한 내용으로 설치위치, 설치비율, 바닥마감, 유효바닥면적, 이동식 좌석, 통로구조, 보청장치, 목발이용자 좌석, 좌석배치, 추락방지시설, 무대접근장치, 시야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 또는 뒤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폭1.22m×깊이1.68m 이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폭1.52m×깊이1.68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극장식 좌석배치에서 휠체어 관람석 2개가 맨 앞줄과 맨 뒷줄에 위치한 경우에는 1.68m×1.22m, 중앙에 위치한 휠체어 2개의 공간은 1.52m~1.68m, 1개의 휠체어 관람석은 0.83m~1.22m로 제시하고 있다(Figure 3).

또한 시야의 범위에 따른 좌석배치 방법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휠체어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분산배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Figure 4).

이 외에 목발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통로 중 일정 비율은 앞뒤 관람석 간의 간격을 0.45~0.61m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청장치 청취시스템의 위치 또한 무대로부터 반경 15.24m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과 소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ited States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1991: 318-327).



[Figure 3] Wheelchair Seating Dispersed Throughout Seating Area



[Figure 4] Remove Seats to Provide Wheelchair Seating Spaces

3)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서는 장애인 관람석 관련 내용으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 설치비율, 바닥마감, 유효바닥면적, 보청장치, 보호자석, 좌석배치, 안내표지, 시야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 비율은 150 관람석 규모 이하의 시설에서는 타 문헌에 비해 가장 높지만, 500석 이상 규모에서는 설치 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Table 5).

[Table 5] Number of Wheelchair Spaces in Assembly Areas

number of seats	minimum number of required wheelchair spaces	percentage
4 to 25	1	4~25%
26 to 50	2	4~7.6%
51 to 150	4	2.6~7.8%
151 to 300	5	1.6~3.3%
301 to 500	6	1.2~1.9%
501 to 5000	6, plus 1 for each 150, or fraction thereof, between 501 through 5000	0.7~1.2%
5001 and over	36, plus 1 for each 200, or fraction thereof, over 5000	up to 0.7%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비율은 UFAS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며(Table 5), 보청장치 설치개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타 문헌과 차별성을 보인다(Table 6).

또한, 장애인 관람석 및 보호자석의 위치에 따른 시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타 문헌과 차별성을 갖는다. 스크린 최상부를 기준으로 한 수직 시각 각도가 맨 앞줄이 1%, 맨 뒷줄이 100%이라고 할 때, 40~100% 범위 내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Justice of the United States, 2010: 77-206).

[Table 6] Receivers for Assistive Listening Systems

capacity of seating	minimum number of required receivers	minimum number of required receivers required to be hearing-aid compatible
50 or less	2	2
51 to 200	2, plus 1 per 25 seats over 50 seats	2
201 to 500	2, plus 1 per 25 seats over 50 seats	1 per 4 receivers
501 to 1000	20, plus 1 per 33 seats over 500 seats	1 per 4 receivers
1001 to 2000	35, plus 1 per 50 seats over 1000 seats	1 per 4 receivers
2001 and over	55, plus 1 per 100 seats over 2000 seats	1 per 4 receivers

4)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에는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 설치비율, 바닥마감, 유효바닥면적, 보청장치, 보호자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 별로 타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비율은 전체 관람석 수의 2%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유효바닥면적을 폭0.9m×깊이1.2m 이상, 좌석의 높이를 0.4m~0.46m 범위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로에서 장애인 관람석에 이르기까지 통로의 경사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20분의 1이하로 아주 완만한 경사로를 제시하고 있다(City of Toronto, 2004: 21-110).

5) BUILDING ACCESS HANDBOOK

'British Columbia Building Code 2006'을 토대로 만들어진 BUILDING ACCESS HANDBOOK에서는 설치위치, 설치비율, 유효바닥면적, 통로구조, 보청장치, 보호자석, 좌석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유효바닥면적을 폭0.9m×깊이1.5m 이상으로 제시, 시설유형 별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비율을 달리 제시하고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의 설치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office in British Columbia, 2007: 6-70).

[Table 7] Number of Wheelchair Spaces in Theatres, Studios and Opera Houses

capacity of seating	minimum number of required wheelchair spaces	percentage
up to 100	2	2% and over
101 to 200	3	1.5~2.9%
201 to 350	4	1.1~1.9%
351 and over	4 plus 1 for each additional 1000 seats or part thereof	up to 1.1%

3.3 Analysis Result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장애인 관람석 관련 법적기준 및 문헌을 분석, 제시되고 있는 항목을 파악하였으며(Table 8), 항목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법적기준의 경우, 편의증진법과 장차법에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위치, 설치비율, 유효바닥면적, 이동식 좌석, 보청장치와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⁵⁾, 최적관람석 관

5) 장차법에서는 제18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따르게 되어있어,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람석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런 지자체 조례에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본사항 외 추가적으로 보호자석, 이동편의시설, 최적관람석의 설치비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문헌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 기본사항 외 추락방지시설(난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서는 기본사항 외 바닥마감, 통로구조, 보호자석, 목발이용자 좌석, 좌석배치, 추락방지시설, 최적관람석 설치비율, 무대접근장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과 같은 항목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적관람석의 비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에서는 기본사항 외에 보호자석, 좌석배치, 안내표지,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법적기준 및 문헌을 살펴본 결과, 편의증진법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근거로 한 기본사항 외에 추가적인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추락방지시설의 기준 및 최적관람석의 비율 등의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보다 표준화·구체화된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유효바닥면적의 경우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폭과 깊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청장치의 경우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최적관람석을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에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하면 피난과 시야범위가 최적관람석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 법적기준 및 문헌의 경우, UFAS에서는 설치비율, 설치위치, 바닥마감, 유효바닥면적, 통로구조, 보청장치, 무대접근장치, 시야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UFAS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개축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UFAS

[Table 8] Parts Relating to Installation of Disabled Auditorium and Optimal Auditorium in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Classification	Parts relating to installation of disabled auditorium and optimal auditorium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Act on Convenience Promotion	●	●		●	●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		●	●		●				●				●		
Local Government Ordinance	●	●		●	●		●	●			●		●	●			
Detailed Standards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	●		●	●		●					●			●		
Installation Manual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	●	●	●		●	●	●	●	●		●		●	●		
Installation Manual of Facilities for Disabled in Cultural Facilities	●	●	●	●		●	●	●	●	●	●	●			●	●	●
Barrier-Free Certification Manual	●			●	●		●	●		●	●	●					
UFAS	●	●	●	●		●	●								●	●	
UFAS Retrofit Manual	●	●	●	●	●	●	●		●	●		●			●	●	●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	●	●	●			●	●		●	●					●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	●	●	●	●			●	●									
BUILDING ACCESS HANDBOOK	●	●		●		●	●	●		●							

Note: Standard of seats in accordance wit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ticle18 section4 is equal to standard of Act on convenience promotion. According to article 'relation with other legislation', Local government ordinance included contents relating to standard of seats of Act on convenience promotion.

(A: installation location/ B: installation rate/ C: floor finishing/ D: valid floor area/ E: movable seat/ F: passage structure/ G: hearing aid device/ H: companion seats/ I: seat for crutches user/ J: seating arrangement/ K: guide sign/ L: fall prevention facility/ M: mobility facility/ N: optimal seating rate/ O: stage access device/ P: field of view/ Q: refuge path)

Retrofit Manual에는 이동식 좌석, 목발이용자 좌석, 좌석배치, 추락방지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서는 추가적으로 보호자석, 좌석배치, 안내표지, 시야범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와 BUILDING ACCESS HANDBOOK에서는 추가적으로 보호자석, 좌석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UFAS에서는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이 타 기준에 비해 강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UFAS Retrofit Manual에서는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에 따른 유효바닥면적과 더불어 휠체어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분산배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청장치 청취시스템의 위치 또한 명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과 소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서는 보청장치 설치개수, 시야의 범위, 시야의 범위에 따른 좌석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타 문헌과 차별성을 보인다.

BUILDING ACCESS HANDBOOK에서는 시설유형별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비율을 달리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외 기준의 법적기준 및 문헌을 살펴본 결과, 국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비율이 국내에 비해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설유형별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비율을 달리 제시하고 있는 문헌도 있었다.

또한,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에 따른 유효바닥면적, 보청장치 설치개수, 보청장치 청취시스템의 위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과 소음, 시야의 범위 및 이에 따른 좌석배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이 국내에 비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Interval Conclusion - A Proposal for Arrangement of Standardized Details of Installation of Optimal Auditorium for the Disabled

장애인 관람석 관련 법적기준 및 문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구체화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의 강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비율은 장애인 관람석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 자체가 낮게 제시되어 최적관람석 수 역시 낮게 책정되므로, 장애인 관람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

을 강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람석 수 대비 일괄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UFAS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람석의 수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소규모의 관람석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적관람석의 비율 또한 강화, 표준화하여 보다 최적화된 관람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적관람석 판단기준의 구체화

장애인 최적관람석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최적관람석 마련에 있어 판단기준의 구체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피난 및 시야범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최적관람석의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최적관람석 설치기준의 마련 및 구체화

법적기준 및 문헌 내에 제시된 항목을 참고로 하여, 문화시설 내 최적관람석 설치에 필요한 항목을 파악, 항목별 기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필요한 항목으로는 설치위치, 설치비율, 바닥마감, 유효바닥면적, 이동식 좌석, 통로구조, 보청장치, 보호자석, 목발이용자 좌석, 좌석배치, 안내표지, 추락방지시설, 이동편의시설, 최적관람석의 판단기준, 설치비율, 무대 접근장치, 시야범위, 피난경로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항목 내 세부항목으로는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에 따른 유효바닥면적, 보청장치 설치개수, 보청장치 청취시스템의 위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과 소음, 시야의 범위 및 이에 따른 좌석배치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제시된 항목별 기준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 국내 기준의 분석 결과 개선 및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효바닥 면적의 경우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UFAS Retrofit Manual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접근유형과 설치위치에 따라 정면/측면/배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유효바닥면적 및 분산배치 할 경우 앞/뒤/중앙에 위치할 경우의 유효바닥면적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기준별 추락방지 난간의 높이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된 치수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목발이용자 좌석의 경우 단순히 통로에 면한 좌석으로 하여 팔걸이를 가변식으로 권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발을 충분히 뻗을 수 있도록 전면 유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청장치 또한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관람을 위한 청취시스템의 위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청장치 설치개수 또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피난과 시야범위에 있어서는 비상시에 특정한 통로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비상탈출통로의 소요 폭을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장애인 관람석 및 보호자의 관람석 시야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야범위에 따른 좌석배치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4) 장애유형별 설치기준 마련

국외 문헌에서 보청장치 설치개수, 보청장치 청취시스템의 위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과 소음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휠체어 사용자 위주에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좌석번호를 점자로 표기하거나 담당자 연락장치를 부착하는 등 장애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문화시설 유형별, 규모별, 좌석배치 유형별 설치기준 제시

문화시설의 경우, 공연형태와 관람형태에 따라 다양한 관람환경이 조성되므로 이에 따른 시설유형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규모에 따라서도 좌석배치가 달라지므로 규모별·좌석배치 유형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5. Conclusion

본 연구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의 선행연구로 장애인 관람석 관련 법적기준 및 문헌을 분석하여 최적관람석 기준마련에 필요한 항목을 파악, 향후 최적관람석의 구체화된 설치기준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로, 관련 국내·외 법적기준 및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적기준 및 문헌 분석 결과

국내 법적기준 및 문헌을 살펴본 결과, 편의증진법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근거로 한 기본사항 외에 추가적인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추락방지시설의 기준 및 최적관람석의 비율 등의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보다 표준화·구체화된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유효바닥면적의 경우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폭과 깊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청장치의 경우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최적관람석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는 피난과 시야범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관련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의 법적기준 및 문헌을 살펴본 결과, 국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비율이 국내에 비해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설유형별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비율을 달리 제시하고 있는 문헌도 있었다.

또한,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에 따른 유효바닥면적, 보청장치 설치개수, 보청장치 청취시스템의 위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과 소음, 시야의 범위 및 이에 따른 좌석배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이 국내에 비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비율은 장애인 관람석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을 강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람석의 수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소규모의 관람석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적관람석 설치에 필요한 항목별 기준내용을 구체화 및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내 기준의 분석 결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접근유형 및 설치위치에 따른 유효바닥면적이 제시되어야 하며, 추락방지시설의 표준화된 치수 제시와 더불어 목발이용자 좌석의 전면 유효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의 관람을 위한 청취시스템의 위치를 제시해야 하며, 보청장치 설치개수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비상탈출통로의 소요 폭을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장애인 관람석 및 보호자의 관람석 시야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야범위에 따른 좌석배치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이 밖에도 장애유형 및 시설유형, 규모, 좌석배치 유형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항목별 구체화된 설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기준 마련을 통해 장애인 관람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적관람석 관련 조례가 지자체별로 꾸준히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Cho, MoonSun et al., 2002, "Prosp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culture of the disabled", Spot Special Education, Vol9, No16,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p.41.
City of Seoul, 2012, "Installation Manual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pp.79-83
City of Toronto, 2004, "City of Toronto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 pp.21-110
Federal Register, 1984,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pp.151-193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office in British Columbia, 2007, "Building Access Handbook", pp.6-70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2010,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pp.77-206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07, "Barrier-Free Certification Manual : Architecture", pp.270-27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Disabled Survey 2014", pp.312-316.
Local Government, 2004-2015, "Optimal Seating Installation-related Ordinan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Installation Manual of Facilities for Disabled at Cultural Facilities", pp.65-7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Detailed Standards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pp.120-13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Act on Convenience Promotion"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s for All, 2012, "A study on Disabled Cinema Environment Survey and Improvement", p.45.
United States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1991, "UFAS Retrofit Manual", pp.318-327

접수 : 2015년 10월 16일
1차 심사 완료 : 2015년 11월 06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11월 06일
3인 익명 심사 필